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법 개정(법률 제4613호)으로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소속공무원의 인적요소를 가장 잘 아는 출장소장에게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하여 인사의 능률성제고 및 신속성을 기하도록 함.
-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준칙통보('95.7.4)

4. 주요골자

-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위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
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조문 중 별표1의 권한 위임사무인 총무과소관
사무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인 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
을 해당 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
본 개정조례안은 출장소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
소속공무원의 인적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 인사의 능률성을
제고하는 한편 지방화 추세에 따른 분권적 측면에서 행정의 민주화를 기할
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